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8블록 오드카운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인접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경기도 교육청 안내사항)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odecounty.com)내 설치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2009. 5. 29일 개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는 121.9750(A)㎡ 주택형(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설치되어 있으며, 123.4070(B)㎡, 122.4160(C)㎡, 122.2320(D)㎡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초과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분양권 전매 및 매매가 제한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전국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2011. 3. 31 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적용이 유예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청 주택정책과 - 11376호(2009. 05. 2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인터넷, 모바일 청약서비스 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 통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접속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8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32층 총 668세대[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3자녀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비고 舊 주택형 표기(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민영주택	22154-01	2009000287(01)	121.9750(A)	121.9758	27.3535	149.3293	61.4678	210.7971	74.0398	238	7	231	149.3293
	22154-02	2009000287(02)	123.4070(B)	123.4079	25.7580	149.1659	62.1895	211.3554	74.9091	211	6	205	149.1659
	22154-03	2009000287(03)	122.4160(C)	122.4164	27.1862	149.6026	61.4932	211.0958	74.3072	133	4	129	149.6026
	22154-04	2009000287(04)	122.2320(D)	122.2325	28.4053	150.6378	61.4008	212.0386	74.1956	86	3	83	150.6378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일반공급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주거전용면적)	공급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0%(계약시)	중도금(60%) 1회 '09. 09. 24	2회 '10. 01. 24	3회 '10. 06. 24	4회 '10. 11. 24	5회 '11. 04. 24	6회 '11. 09. 24	잔 금 (30%)(입주지정일)
121.9750(A)	238	1층	325,563,737	263,156,263	588,720,000	58,872,000	58,872,000	58,872,000	58,872,000	58,872,000	58,872,000	58,872,000	176,616,000
		5층	325,563,737	271,646,263	597,210,000	59,721,000	59,721,000	59,721,000	59,721,000	59,721,000	59,721,000	59,721,000	179,163,000
		8층	325,563,737	277,306,263	602,870,000	60,287,000	60,287,000	60,287,000	60,287,000	60,287,000	60,287,000	60,287,000	180,861,000
		220층	기준층	283,876,263	609,440,000	60,944,000	60,944,000	60,944,000	60,944,000	60,944,000	60,944,000	60,944,000	182,832,000
123.4070(B)	211	3층	1층	328,836,719	263,353,281	592,190,000	59,219,000	59,219,000	59,219,000	59,219,000	59,219,000	59,219,000	177,657,000
		4층	2층	328,836,719	271,853,281	600,690,000	60,069,000	60,069,000	60,069,000	60,069,000	60,069,000	60,069,000	180,207,000
		8층	3층	328,836,719	277,513,281	606,350,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181,905,000
		196층	기준층	328,836,719	283,943,281	612,780,000	61,278,000	61,278,000	61,278,000	61,278,000	61,278,000	61,278,000	183,834,000
122.4160(C)	133	2층	1층	326,663,455	259,236,545	585,90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175,770,000
		3층	2층	326,663,455	267,606,545	594,270,000	59,427,000	59,427,000	59,427,000	59,427,000	59,427,000	59,427,000	178,281,000
		8층	3층	326,663,455	273,176,545	599,840,000	59,984,000	59,984,000	59,984,000	59,984,000	59,984,000	59,984,000	179,952,000
		120층	기준층	326,663,455	279,726,545	606,390,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181,917,000
122.2320(D)	86	1층	1층	326,533,890	260,706,110	587,240,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176,172,000
		2층	2층	326,533,890	269,116,110	595,650,000	59,565,000	59,565,000	59,565,000	59,565,000	59,565,000	59,565,000	178,695,000
		4층	3층	326,533,890	274,726,110	601,260,000	60,126,000	60,126,000	60,126,000	60,126,000	60,126,000	60,126,000	180,378,000
		80층	기준층	326,533,890	280,996,110	607,530,000	60,753,000	60,753,000	60,753,000	60,753,000	60,753,000	60,753,000	182,259,000

▣ 마이너스옵션 공급금액

(단위 : ㎡, 원)

주택형(주거전용면적)	공급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0%(계약시)	중도금(60%) 1회 '09. 09. 24	2회 '10. 01. 24	3회 '10. 06. 24	4회 '10. 11. 24	5회 '11. 04. 24	6회 '11. 09. 24	잔 금 (30%)(입주지정일)
121.9750(A)	238	1층	325,563,737	234,956,263	560,520,000	56,052,000	56,052,000	56,052,000	56,052,000	56,052,000	56,052,000	56,052,000	168,156,000
		5층	325,563,737	243,446,263	569,010,000	56,901,000	56,901,000	56,901,000	56,901,000	56,901,000	56,901,000	56,901,000	170,703,000
		8층	325,563,737	249,106,263	574,670,000	57,467,000	57,467,000	57,467,000	57,467,000	57,467,000	57,467,000	57,467,000	172,401,000
		220층	기준층	255,676,263	581,240,000	58,124,000	58,124,000	58,124,000	58,124,000	58,124,000	58,124,000	58,124,000	174,372,000
123.4070(B)	211	3층	1층	328,836,719	235,183,281	564,020,000	56,402,000	56,402,000	56,402,000	56,402,000	56,402,000	56,402,000	169,206,000
		4층	2층	328,836,719	243,683,281	572,520,000	57,252,000	57,252,000	57,252,000	57,252,000	57,252,000	57,252,000	171,756,000
		8층	3층	328,836,719	249,343,281	578,180,000	57,818,000	57,818,000	57,818,000	57,818,000	57,818,000	57,818,000	173,454,000
		196층	기준층	328,836,719	255,773,281	584,610,000	58,461,000	58,461,000	58,461,000	58,461,000	58,461,000	58,461,000	175,383,000
122.4160(C)	133	2층	1층	326,663,455	231,626,545	558,290,000	55,829,000	55,829,000	55,829,000	55,829,000	55,829,000	55,829,000	167,487,000
		3층	2층	326,663,455	239,996,545	566,660,000	56,666,000	56,666,000	56,666,000	56,666,000	56,666,000	56,666,000	169,998,000
		8층	3층	326,663,455	245,566,545	572,230,000	57,223,000	57,223,000	57,223,000	57,223,000	57,223,000	57,223,000	171,669,000
		120층	기준층	326,663,455	252,116,545	578,780,000	57,878,000	57,878,000	57,878,000	57,878,000	57,878,000	57,878,000	173,634,000
122.2320(D)	86	1층	1층	326,533,890	232,906,110	559,440,000	55,944,000	55,944,000	55,944,000	55,944,000	55,944,000	55,944,000	167,832,000
		2층	2층	326,533,890	241,316,110	567,850,000	56,785,000	56,785,000	56,785,000	56,785,000	56,785,000	56,785,000	170,355,000
		4층	3층	326,533,890	246,926,110	573,460,000	57,346,000	57,346,000	57,346,000	57,346,000	57,346,000	57,346,000	172,038,000
		80층	기준층	326,533,890	253,196,110	579,730,000	57,973,000	57,973,000	57,973,000	57,973,000	57,973,000	57,973,000	173,919,000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수원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해당되어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 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밖의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필로티 외 1층 필로티 공간을 1~2개층으로 간주하여 층과 호수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상기 공급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주택형별로 비용 및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 카탈로그 참조)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는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아파트는 주택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 적용이 되는 주택지역으로, 본 주택은 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산정한 결과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0원임 - 사업계획가 장래에 대한주택법(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의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당 사업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총 20세대 [3자녀 특별공급 20세대(3%)]를 특별공급함 - 계약자는 중공후 입주시 단지관리 운영을 위한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 06. 03(수)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선정,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06. 03(수) 16:0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2009. 06. 22(월) ~ 2009. 06. 24(수) (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 검색 또는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지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동호수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무주택 3자녀 이상 특별공급(총 20세대, 3%)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21.9750(A)㎡	123.4070(B)㎡	122.4160(C)㎡	122.2320(D)㎡	합계
공급세대수	경기도	3	3	2	2	10
	서울특별시	3	2	2	1	8
	인천광역시	1	1	0	0	2
	합 계	7	6	4	3	2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05.2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19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있는 자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던,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만21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입주자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단, 동호수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관을 입증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계산방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공공주택팀-2660)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무주택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미성년자녀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 3자녀 이상 특별공급 구비서류

본인 신청서(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는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준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제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신청서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상기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오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국토해양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2)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9.05.28) 현재 수원시(용인시 포함)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수원시(용인시 포함)에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지역에 30%를 우선공급하며, 70%를 수도권 주택청약에 공급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하기는 하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8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던,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단, 2009. 4. 1 ~ 2011. 3. 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기간 중이라도 민영주택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으로 변경처리를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주택형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 지역
전용 면적 102㎡초과 ~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청약가점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점자를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 가점 항목 및 점수: 무주택 점수(32점), 부양가족(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 84점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개월 30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3순위 청약신청금 및 청약방법

● 청약신청금

장 소	청약 신청금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우리은행 본/지점	100만원	가능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신청자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09. 06. 17) 이후 평일 09:00 ~ 16:00(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및 은행영업 휴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 지점(단, 본인의 우리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자 환불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각 주택형별 신청자